



<b>보도일시</b>	2021. 5. 11(화) 12:00 이후 사용 (석간 사용 가능)	<b>배포일시</b>	2021. 5. 10(월) 배포
<b>담당부서</b>	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	<b>담당자</b>	팀장 최승욱, 사무관 김용관 (044-200-2555, 2559)
	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		과장 김동현, 사무관 홍예표 (044-201-3820, 3821)
	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		과장 전종태, 서기관 권하중 (044-205-3631, 3532)
	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		과장 김태경, 사무관 나세정 (044-203-6285, 6295)
	경찰청 교통안전과		총경 양우철, 경정 최대근 (02-3150-2052, 2152)

##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,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

**5월 13일 (목)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
무면허 운전 10만원, 안전모 미착용 2만원,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
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·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**

- 국무조정실·국토부·행안부·교육부·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,
  -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.
-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, PM)가 최근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\*함에 따라 안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,
  - \* 국내 PM 규모(교통연구원) : '17년 9.8만대 → '18년 16.7만대 → '19년 19.6만대
  - 지난 해(20.12.10)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(PM)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,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.

- 다만,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,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(20.12.9)하였습니다.
-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(운전자격 강화)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(PM)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,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.
  - (처벌 규정 신설)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(범칙금 2만원), 승차정원 초과 탑승(범칙금 4만원) 및 어린이(13세 미만) 운전 시 보호자(과태료 10만원)에게 범칙금·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(PM)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.
-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,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  - 관계부처-지자체-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, 대학교,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,
  -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,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,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  - 그리고,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맞춤형 교육' 실시하고,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·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또한,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(PM) 업체(15개사)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, 주·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(PM) 민·관협의체\*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\*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-지자체-공유PM 업체-공공기관 등이 참여(20.11.30~)

- 아울러,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 공익광고\* 영상을 TV·라디오 등에 송출하고, 카드뉴스·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·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,

\* '굿 라이더'편(공익광고협의회 제작) 지상파TV, 종편, 케이블, 라디오 등 방송 매체 및 IPTV,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송출(4.8~5.30, 약 2개월)

- KTX·SRT역, 전광판,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「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\*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\* 현재 국회에는 「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

-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\* 최근 3년 PM 사고(사망) : '18년 225건(4명) → '19년 447건(8명) → '20년 897건(10명)

- 특히, 개인형 이동장치(PM)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,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.

**붙임**

**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**

구 분		현행 도교법 (2020. 12. 10. 시행)	개정 도교법 (2021. 5. 13. 시행)
통행방법		'자전거도로' 통행 원칙(보도 통행 불가)	
운전면허		×	<b>원동기면허 이상</b>
무면허 운전 처벌		×	○ (범칙금 10만원)
어린이 운전금지			○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		×	○ (과태료 10만원)
운전자 주의의무	동승자 탑승금지		○
	처벌	×	○ (범칙금 4만원)
	안전모 착용		○ (자전거용 안전모)
	처벌	×	○ (운전자 범칙금 2만원, 동승자 과태료 2만원)
	등화장치 작동		○
	처벌	×	○ (범칙금 1만원)
	과로·약물 등 운전		○
	처벌	×	○ (범칙금 10만원)
주요 처벌조항	음주운전	단순음주 :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: 범칙금 10만원	단순음주 :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: 범칙금 13만원
	신호 위반/중앙선 침범/ 보도 주행/ 보행자 보호위반	범칙금 3만원	동일
	지정차로 위반 (상위차로 통행)	범칙금 1만원	동일